부동산학개론





## 부동산투자회사법(부착)

교수 : 박 덕 연

과정 : **심화이론 강의자료 (7주차)** 

## 부동산투자회사법(p433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리츠(K-REITs)   |                | 기업 구조조정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---|--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자기관리<br>부동산투자회사(실체회사)   | 위탁관리<br>(명목회사) | 부동산투자회사(CR-REITs)<br>(명목회사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설립자본금<br>(영업인가 또는<br>등록 후) | • 5억원<br>(70억원)   | •3억원<br>(50억원) | •3억원<br>(50억원)  |  |
| 현물출자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갖춘 후 가능  |                |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※ 부동산 + 지상권,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, 신탁 수익권 등도 허용  |                |   |  |
| 주식의 분산<br>(1인당 보유한도)       | •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함   |                | 제한 없음   |  |
| 주식공모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<br>생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청약   |                | • 의무사항 아님   |  |
| 상 장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상장요건을 갖춘 후 즉시 상장  |                |   |  |
| 회사의 자산구성                   | •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<br>부동산, 부동산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<br>•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<br>어야 한다. |                | •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<br>100분 70이상을 구조조정 관<br>련된 부동산으로 구성 |  |
| 운용기관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내부조직(상근직원 있음)   | 자산관리회사에        | 에 위탁(상근직원 없음)   |  |
| 배당                         | • 90% 이상 의무 금전배당  | • 90% 이상 배딩    | % 이상 배당 시 법인세 비과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차입과 사채                     | • 주주총회 특별 의결 시 자기자본의 2배 초과가능  |                |   |  |
| 합병제한                       | •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 금지   |                |   |  |
| 감독기관                       | • 국토교통부장관, 금융위원회  |                |   |  |
| 세제혜택                       | •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 면제 없음<br>• 위탁·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90% 이상 배당할 경우 법인세 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|  |